

개정개요

※ 국세 반영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지급	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대상 및 지급률 조정
○ 납세조합(<u>근로자·사업자조합</u>)이 납부한 세액의 <u>100분의2</u>	○ 납세조합(<u>근로자조합</u>)이 납부한 세액의 <u>100분의1</u>

 개정 내용

- 국세와 동일*하게 징수교부금 지급 대상 납세조합의 범위(^{현행}근로자·사업자조합 → ^{개정}근로자조합) 및 지급률(특별징수액 ^{현행}2% → ^{개정}1%) 개정

* 국세에서 징수교부금 지급 대상 납세조합의 범위(^{현행}근로자·사업자조합 → ^{개정}근로자조합) 및 지급률(원천징수액 ^{현행}2% → ^{개정}1%) 개정(25.5.1., 국세청 고시)

 적용 요령

-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(부칙 제16조 경과조치)

※ (예시) '25.12.28.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자조합에서 원천징수하여 '26.1.10.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액의 2%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 가능

|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(징수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